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20 선고 2019가합409301 판결 [공사대금청구의 소]

재 판 경 과

수원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0나25235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20 선고 2019가합409301 판결

전 문

원고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이지은

피고1. C 주식회사

2. D

3. 주식회사 E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준

변론 종결2020. 8. 11.

판결 선고2020. 10. 2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3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2020. 7. 28.까지,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는 각 2020. 7. 13.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87,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2019. 9. 1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D은 2018. 10.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의정부시 F, G,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34세대 및 기시공 10세대 마무리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20,000,000원, 공사기간 2018. 10. 18.부터 45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계약'이라 한다).

2) 피고 C은 2018. 10. 1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7,00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3) 하수급인 원고 A와 수급인 피고 C, 도급인 피고 D은 2018. 10. 16. 피고 C이 원고 A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피고 D이 원고 A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하고, 시행사이자 피고 D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피고 D의 위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 A는 2018. 11. 10. 이 사건 내장공사에 착공하여 이 사건 내장공사 및 37,60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다.

5) 원고 A는 이 사건 내장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 중 천정 도배, 벽지, 장판공사를 수행하다가 2018. 12. 24.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공사진행이 어려워지자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6) 한편 원고 A는 2018. 10.경 이 사건 내장공사 중 천정 도배, 벽지, 장판공사를 포함한 일부 공사를 169,400,000원에 I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는 J에게, 위 J은 그중 천정 도배, 벽지, 장판 공사를 40,000,000원에 K이라는 상호로 도배 및 장판업을 하는 L에게 재하도급하였는데, 위 L은 2019. 2. 1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나머지 천정 도배, 벽지, 장판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3, 14, 15호증, 을나 제1, 2호,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2019. 2. 14. 이 사건 내장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피고 E는 피고 D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374,600,000원(= 이 사건 내장공사 대금 337,000,000원 +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 37,600,000원, 이하 이 사건 내장공사 대금과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중 피고 D이 천정 도배, 벽지, 장판 공사의 재하수급인 L에게 직접 지급한 40,000,000원을 제외한 334,600,000원(= 374,600,000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2018. 12. 중순경 이 사건 내장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40%만 완성한 상태에서 중단하였고 피고 D이 나머지 60%의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인 M 주식회사(보일러, 옥상핸드레일, 도기), N(페인트), O(용역), L(도배·장판)을 통하여 직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내장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 을나 제4, 12,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는 공사완성의 증거로서 이 사건 내장공사 및 추가공사인 주차장 천정, 타일, 페인트 공사, 천정 도배, 벽지, 장판, 방화문, 창호, 조경, 기타공사(실내 목공사, 실내 벽제공사, 홈통 공사, 옥상핸드레일, 도기 등), 신발장, 주방가구, 보일러 설치 공사의 주요 공정이 마쳐진 현장 사진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 D이 제출한 공사일보 및 직영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내장공사 및 추가공사와 관련된 직영공사로는 보일러 수정작업, 위생도기 곰방(자재운반), 방화문 비닐제거, 창호 비닐제거, 베란다 타일 및 메지작업 등이 있으나 대부분 원고 A가 수행한 공사를 수정,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거나 완공 후 수행할 보수공사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 D이 천정 도배, 벽지, 장판공사의 재하수급인인 L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 A와 피고 C간의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원고 A와 J 사이의 천정 도배, 벽지, 장판공사를 포함한 재하도급계약, J과 L 사이의 천정 도배, 벽지, 장판공사계약이 각 종료되고 피고 D이 L과의 계약을 통하여 천정 도배, 벽지, 장판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는 2019. 2. 14. 이 사건 내장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 피고 E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피고 D이 재하수급인 L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334,600,000원(= 374,600,000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내장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부분을 피고 C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19. 2.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7. 13.까지 각 상법 상의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 E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에게 지급한 1억 700만 원 변제 항변 피고 D, E는 피고 D이 피고 C에게 2019. 3. 13. 2,700만 원, 2019. 6. 18. 1,000만 원, 2019. 7. 9. 5,000만 원, 2019. 8. 1. 1,500만 원, 2019. 11. 19. 500만 원 합계 1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D의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른 채무도 변제로서 일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이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직접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 D이 피고 예선종합건설에 공사대금 1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직불합의 또는 직접 지급요청이 있은 이후의 것으로서 원고 A의 이 사건 공사대금지급 청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지체상금으로의 상계 항변 피고 D, E는, 가사 원고 A가 2019. 2. 14.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 완공의 지연이 피고 C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 D은 원고 A의 하도급대금직접청구권이 발생한 2019. 2. 14. 이전에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지체상금 채권 63,000,000원[= 공사대금 420,000,000원 × 50일(공사기한 다음날인 2018. 12. 26.부터 원고 A가 주장하는 공사완공일 2019. 2. 14.까지) × 3/1,000)]을 보유하므로, 위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A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원도급 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이 2019. 12. 26.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원도급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지체상금에 관하여 '시공사와 관계없이 준공이 지연될 시 건축주 패널티는 일일 공사비의 1,000분의 3을 시공사에 부담한다'고 되어 있을 뿐 피고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급인인 피고 C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율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C에 대한 지체상금의 발생여부나 그 지체상금이 위 금액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D의 주장과 같이 피고 D의 피고 C에 대한 위와 같은 지체상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은 2019. 5. 30. 피고 C에게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4천만 원으로 정산 합의하였다는 주장인바, 위 주장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C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을 포기 내지 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의 피고 C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

1) 청구의 표시 원고 A는 2019. 2. 14. 이 사건 내장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D,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74,600,000원 중 피고 D이 재하수급인 L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제외한 334,600,000원(= 374,600,000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내장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부분을 피고 C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19. 2.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7. 28.까지 상법 상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원고 B의 청구

1) 청구의 표시 원고 B은 2018. 12. 3. 피고 C과 사이에 의정부시 P 신축빌라 외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9,300,000(부가세 10%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24. 위 외부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날 피고 C에 위 공사부분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87,230,000원(= 공사대금 79,300,000원 + 부가가치세 7,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 날인 2018.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상법 상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광현

판사박애경

판사정우용